

일반사무 위탁계약 변경계약서

본 일반사무 위탁계약 변경계약서(이하 “**본 변경계약서**”)은 2023년 5월 3일(이하 “**본 변경계약 체결일**”)에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다.

위탁자 주식회사 마스던제1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, 20~21층(서초동)
(이하 “**위탁자**”)

수탁자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, 18,19,20층
(여의도동, 현대차증권빌딩)
(이하 “**수탁자**”)

본 변경계약에서 “위탁자” 및 “수탁자”는 각각 “당사자”로 지칭하며, 집합적으로 “당사자들”로 총칭한다. 본 변경계약에서 “상대방 당사자”는, “위탁자”에게는 “수탁자”를, “수탁자”에게는 “위탁자”를 각각 의미한다.

전 문

위탁자는 수탁자와 2016년 3월 일 일반사무 위탁계약서(이하 “**기존 일반사무 위탁계약**”)이라 함)을 체결하여 일반사무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였다.

위탁자는 본 변경계약 체결일 현재 보유 중인 부동산 전체를 매각하고 법인 해산 및 청산을 진행할 예정이며, 이에 당사자들은 본 변경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.

제 1조 (용어의 정의)

본 변경계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, 본 변경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기존 일반사무 위탁계약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.

제 2조 (변경사항)



당사자들은 기존 일반사무 위탁계약에 규정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8조 (보수)</p> <p>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일반사무 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보수는 결산기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.</p> <p>위탁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위탁자의 청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의 보수는 연간 금 삼천만원 (₩30,000,000)(부가가치세 별도)으로 하고, 매 결산기마다 금 일천오백만원 (₩15,000,000)(부가가치세 별도)을 해당 분기 종료 후 칠(7)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. 다만 당해 분기의 수탁자의 업무 수행기간이 6개월에 미달하는 경우, 당해 분기의 보수는 180일을 기준으로 실제 업무 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 만약 6개월이 초과될 경우, 매 결산기 단위의 수수료와 6개월이 초과된 기간을 180일에 대한 실제업무 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(신설)</p>	<p>제8조 (보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본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유 부동산 (본 변경계약 체결일 현재 기준 보유 부동산 전체)의 처분일이 속한 결산기 (이하 "자산 처분 결산기") 종료일 익일 부터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되는 날까지의 보수는 2,000만원(부가가치세 별도)</u></p>



	<p>으로 하며, "수탁자"는 자산 처분 사업 연도 종료일 익일에 본항에 따른 보수 를 일괄 청구하고, "위탁자"는 "수탁자" 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.</p>
--	---

제 3 조 (효력)

- (1) 본 변경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 일반사무 위탁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.
- (2) 본 변경계약은 본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적용하기로 한다.

(다음페이지의 기명날인을 위하여 이하 여백)



본 변경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변경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
기명날인하고 원본 각 1부를 보관한다.

2023년 5월 3일

“위탁자”

회 사 명 : (주)마스틴제1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주 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, 20~21층(서초동, 교보생명보험(주) 서초사옥)

대표이사 : 이 석 연 (인)



“수탁자”

회 사 명 :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

주 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, 18, 19, 20층(여의도동, 현대차증권빌딩)

대표이사 : 정 지 호 (인)

